

※ 본 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교육시 강의한 원고를 편집한 것입니다.

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

한국PL법연구원



1. PL법에 의한 경영환경 변화

2002년 7월 이전

-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: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
 - Claim 제기 가능 : 위로금 지급
 - 소송 가능성 희박 : 과실의 입증 곤란

※ Claim 제기에 따라 회사 정책상 위로금 지급수준에서 종결시킴으로 이외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

2002년 7월 이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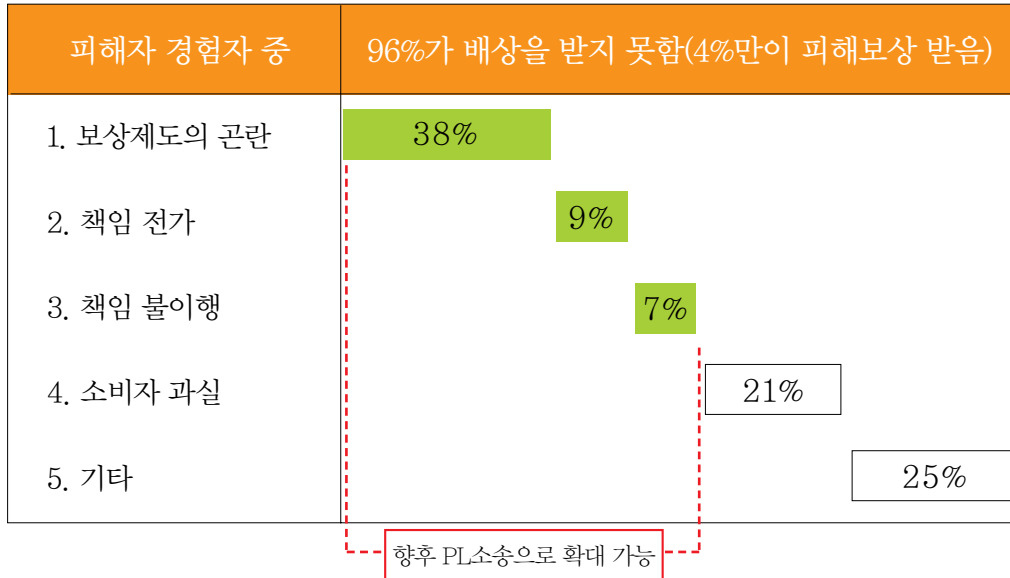
- PL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: 제품 결함을 입증
 - Claim제기 가능 : 위로금 지급 - 불만 시 소송제기 가능
 - 소송제기 가능 : 제품결함 입증 - 설계, 제조, 표시(지시, 경고)의 결함
 - 소송 패소 시 : 손해배상금, 소송비용, 조사, 시험비용, 보험금 상승, 제품이미지 추락 등
 - ※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막대한 소송비용 및 인적, 물적 자원의 낭비, 기업 이미지 회복에 많은 기간·비용 소요
 - ※ 이미 일부 소송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, 특히 시범케이스가 될 경우엔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.

소비자 피해사건의 동향

- 양적 변화 : 클레임의 지속적인 증가
-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 접수건수 통계
- 질적 변화 : 부당청구, 소비자 기대기준 상승 (과학기술의 진보), 손해에 관한 주장의 변화
-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원인
 - PL법의 시행에 따른 국민의 권리의식의 고양
 - 고객상담 창구 등의 접수의 충실
 - 경기둔화 (기업간 클레임의 증가)
 - 다양한 소비자 관련법의 제정

□ 우리나라의 PL클레임 관련 설문조사 결과

한국소비자원 공청회 자료(1998년 11월)



2. 긍정적인 영향

□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됨

- 제조물책임을 묻게 되는 근거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
- 제조업자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기 보다 사전에 제품안전대책을 강구하게 됨

□ 소비자 보호의 충실

-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사고피해에 대한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충실
-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소비자단체 언론의 홍보로 지금까지 입증의 곤란으로 구제 받지 못한 클레임 소송건수가 증가될 가능성

□ 기업의 경쟁력 강화

- 제품안전대책이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부각되어 안전한 제품만이 경쟁력이 있음
- 소비자는「제조물의 안전성」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 제조업자는「안전한 제조물」이 중요한 세일즈포인트가 됨.
- 안전한 제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'PL'이라는 마크나 '책임대응 상품'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용됨

3. 부정적인 영향

소비자 클레임의 증가

- 제조물책임법의 시행과 그에 관한 마스크 등의 빈번한 보도
-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
-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1995년 7월에 상담과 불만제기 건이 두 배로 증가

제조원가의 부담

- 제품안전에 드는 비용 상승
- PL보험료(PL보험은 PL위험에 대처하는 유효한 수단이지만 고액의 리콜 비용과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에게 닥칠 수 있는 징벌적 배상금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음)

일본의 PL법 시행 전후의 비교

- 1994년 6월 22일 제조물책임법 제정
- 1995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

년 도	PL관련 신고건수	확대손해 발생건수		문의 건수
1994년	3,071	1,175	(-)	651
1995년	5,765	2,608	(605)	1,025
1996년	5,305	2,745	(1,105)	272
1997년	4,398	2,709	(1,636)	112
1998년	3,850	2,498	(2,150)	105
1999년	3,764	2,361	(1,864)	143

- 일본의 국민생활센터 및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내용임.
- ()안의 숫자는 PL법 시행 이후 유통된 PL관련 상담 건수임.
- PL법 시행 이후 2000년 12월까지의 PL관련소송건수는 160여건 정도임.

인력자원의 낭비

- PL과 관련된 클레임이나 소송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장기화 추세
- 소송의 승패에 관계없이 엄청난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게 됨.
- 기업의 중요사안으로 부각되고 장기화되면 최고경영자는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집행에 충분한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됨
- 실무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작성과 준비에 많은 인원과 시간이 낭비되게 됨.

- 나아가 설계 품질관리 경고파트의 책임자나 기술자가 본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몇 년간 PL소송에 관여하는 낭비도 초래하게 됨.

[1989년 미국 GM사 픽업 트럭 폭발사고(10대 소년 1명 사망사건)]

- 4년간의 소송과 1억500만달러의 배상금
- 4년 동안 트럭 두 대분의 자료 제출
- 250명의 인원동원



□ 신제품 개발의 지연

-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은 기업에게 엄격책임을 묻게 되므로 제품의 안전기준은 더욱 엄격
- 제품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신제품의 개발이 지연될 수 있음.

□ 기업 이미지의 실추

- 제조물책임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된 피해배상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음.
- 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에 손해가 생기는 것보다 기업이미지의 실추가 더 큰 문제임.
※ 1994년 일본에서는 마쓰시타 전기가 제조한 TV의 화재로 사무실이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제조자가 소송에서 패소(배상금 : 440만엔)하자 동일한 TV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전화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신문 등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기업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을 입음.

□ 사례1 : 유제품 제조업자(유끼지루시)의 대규모 식중독 사건

- 대응 비용 : 약 300억 엔
- 매출액 감소 : 전년 대비 1300억엔 감소(예상)
- 형사책임 : 업무상 과실치사상죄
- 행정책임 : 영업정지(1개월), 과태료 등
- 민사책임 : 피해자들의 집단적인 손해배상 청구
- 기타손해 : 기업의 이미지 손상 등

□ 사례2 : 자동차제조업자(미쓰비시)의 리콜 은폐사건

- 대응비용 : 약75억엔
- 주가 : 30% 하락